

특목

2016학년도

# 신입생 입학 전형 요약



2015. 8. 19

**김해외국어고등학교**  
GIMHAE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http://www.gimfl.hs.kr/>

우)51021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266 (율하동 262)

Tel : 055)312-1280 FAX : 055)313-3228

## 1 모집 지역: 경상남도

## 2 모집 학과 및 모집 인원 (남·여, 5학급, 131명)

전공학과	학급수	정원 내 전형(명)			모집 정원	정원 외 전형(명)	
		일반전형	김해지역 우수자전형	사회통합 전형		교육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자녀)	특례 입학
영어중국어과	2	30	10	10	50	3	3
영어일본어과	1	15	5	5			
중국어영어과	1	15	5	5			
일본어영어과	1	15	5	5			
합계	5	75	25	25	125	3	3

- ※ 학과별로 지원 후 선발하며, 한 가지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학과 간, 전형 간 복수지원 불가)
- ※ 영어중국어과는 영어를 제1외국어로 전공하고,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전공한다는 의미임
- ※ 정원 외로 지원하는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는 사회통합전형과 동시 지원할 수 없음
- ※ 특례입학의 경우 본교 수능능력을 고려하여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3명의 범위내에서 선발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 3 지원 자격

- 가. 공통자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경상남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2)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구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응시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김해지역우수자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 나)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 다) 외국어고등학교가 없는 시·도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 라)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마) 타 시·도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 바)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지역별·학교군별 추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타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 위 '2)'의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란 '당해 학교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부모, 학생)이 경상남도에서 단독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함  
 ※ 혁신도시에 이전 예정된 기관 종사자의 자녀는 도내·외 중학교 소재 및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경남 혁신도시 이전(예정) 기관 현황 (11개 기관)

중앙관세분석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세라믹기술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주택관리공단, 국방기술품질원

-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제2항에 의거 인접 시·도 관계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졸업(예정)자(부산광역시 가락중학교 졸업(예정)자)

나. 전형별 지원 자격(정원 내): 가 항의 공통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해당 지원 전형 자격을 갖춘 자

전형구분	유형별 지원 자격	
일반전형	본교 진학의지가 분명한 자	
김해지역 우수자전형	김해시 관내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전학자는 2학년 1학기(4월 1일 기준, 4월 1일 전학자 포함)부터 재학한 자	
기회균등전형	기초생활수급자(법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 계층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연금대상자, 차상위 우선돌봄대상자 등) (인정)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 가구의 <b>최근 6개월간</b> 의 건강보험료 <b>평균</b> 납부액이 <표 1> 일정액 이하인 사람
	차차상위 계층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로 가구의 <b>최근 6개월간</b> 건강보험료 <b>평균</b> 납부액이 <표 1> 일정액 이하인 사람
	학교장 추천자	위의 각 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부양 의무자의 파산·폐업·종장에 등으로 생계가 극히 어렵다고 중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법정)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자의 부모 중 일방이 외국 국적자이거나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3호에 해당하는 자
	아동보호시설 재원자	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된 보육시설에서 재원 중인 자
사회통합전형	소년·소녀 가장	거주지 관할 시·군(읍)·구청에 소년·소녀 가장으로 등재된 자
	조손가정 자녀	조손가정의 자녀
	장애인 자녀	부 또는 모 장애 1, 2등급 가정의 자녀
	순직 공무원 자녀	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환경미화원·공무원의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자녀(단, 자녀 중 1명에 한함)
	*한부모가정(기타)	부자(녀)가족 또는 모자(녀)가족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 미발급자)
	군인자녀	준·부사관으로 현재 재직 중인 자의 자녀 (경력 15년 이상)
	소규모학교 졸업예정자	읍·면 소재 학교 중 3학년이 1학급인 중학교 졸업예정자 ( <b>입학 ~ 원서접수일 현재까지 재학자</b> )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녀	문화재보호법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녀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 사회통합전형 참고사항

1)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전형」

- 가) 모집학과별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50% 이상을 기회균등전형으로 우선 선발 (미충원 시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으로 선발)
- 나) 기회균등전형 대상자: 법정대상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지원 자격 판단에 최저생계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건강보험 납입금을 기준으로 함

<표 1> 2016학년도 최저생계비에 따른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단위 : 원)					최저 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781,168.5	24,280	3,571	24,944	1인	926,000	28,462	6,730	29,371
2인	1,330,098.0	40,515	18,324	41,017	2인	1,577,000	48,368	26,859	48,560
3인	1,720,682.0	52,333	32,803	52,957	3인	2,040,000	62,201	48,941	62,970
4인	2,111,266.5	64,080	52,026	64,956	4인	2,502,000	75,980	72,579	76,843
5인	2,501,851.0	75,980	72,579	76,843	5인	2,965,000	90,671	91,873	91,062
6인	2,892,435.0	88,430	88,962	89,521	6인	3,428,000	104,450	112,143	105,783
7인	3,283,019.5	99,769	105,472	100,852	7인	3,891,000	118,139	130,183	119,751
8인	3,673,604.0	112,221	122,708	113,621	8인	4,354,000	133,489	147,619	135,442
9인	4,064,188.5	124,384	137,773	126,158	9인	4,817,000	147,705	162,840	149,834
10인	4,454,773.0	135,442	149,772	137,248	10인	5,280,000	161,683	177,862	164,396

※ 4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50%는 기준 중위소득 약 59.2%에 해당(2015년 기준)

<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시 유의사항 >

① 가구원 수 산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를 기준으로 배우자(사실혼 포함),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
- 부모(또는 자녀)와 주거를 달리하여 생활하는 자로 부모(또는 자녀)의 건강보험증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포함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가 모두 등재되었는데 제출한 건강보험증 사본(원본 대조필)에 학생의 부·모 중 한명이 없는 경우,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증 사본(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하며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각각 제출받아 **합산**하여 적용한다.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경우라도 반드시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한다.
-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중학교장은 사회통합전형으로 지원 시 기회균등전형 대상자가 우선 선발대상임을 감안하여 지원 자격과 제출 서류를 정확히 검토 후 추천하여야 하며, 특히 학교장 추천자 선정·추천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

**【학교장 추천자 대상자 선정(예시)】**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적으로 생계에 극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극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자영업자인 부양의무자가 폐업·휴업 등으로 생계에 극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1주택 거주자로, 그 주택이 경매절차 진행 중이라 생계에 극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선정 절차】**

- 중학교는 학교장 책임 하에 사회통합전형 **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추천 대상자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필요시 현장 확인)를 토대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천 (예시 : 실직급여수급증(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사본), 폐업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의 단순 판단이 아닌 **종합적인 판단 필요**

**2) 사회통합전형 중 「사회다양성전형」**

- ▶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는 일정소득범위(소득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 자녀에 한함**  
- 아래 <표 2> 건강보험료 기준 참고
- ▶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 법정 대상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한부모가정 자녀(기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가 발급되는 자는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임)

※ **다자녀가정 자녀(3자녀 이상)**

-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자녀 1명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함**
- 본교는 '다자녀가정 자녀' 합격자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있으므로 2014학년도 이후 경상남도 내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에 다자녀가정 자녀유형으로 입학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2016학년도 사회통합전형의 '다자녀가정 자녀 유형'에 지원할 수 없음

○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하여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이 취소되며, 원서 접수시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첨부

<표 2> 소득 8분위로 인정되는 건강보험료 기준 (단위: 원)

분위 구분 (경계값)	연소득 환산액	월소득 평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8분위 (P80)	71,543,571	5,961,964	182,127	199,987	185,538

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납입금(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을 기준으로 판단

- 가구의 월 소득 평균액이 **5,961,964원** 이하인 학생으로,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이 <표 2>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

-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 적용 시 4쪽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시 유의사항 > ②항 적용

나) **'직장 가입자' 및 '혼합'** : 건강보험 납입금 및 재산세 납입 기준(추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건강보험 납입금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판단

- 가구의 월 소득 평균액이 **5,961,964원** 이하인 학생으로,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이 <표 2>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

-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 적용 시 4쪽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시 유의사항 > ②항 적용

- **재산세 납입 기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로 판단 (단위: 원)

소득구분	월 추정 소득	재산 추정 금액	재산세 납입금(연간)
8분위	5,961,964	577,591,500	756,220

- 재산세 납입금은 **주택(아파트) 재산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 총 재산세(주택 기준)=기본재산세+도시계획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 재산세 납입 기간(증명서 발급): 서류 **제출일** 기준 최근 1년분

- 각자 재산세를 납부하는 부모는 각자의 지방세 과목별 과세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합산**하여 적용한다.

**3) 2016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유의점**

- ▶ **기회균등전형에서 탈락한 지원자는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에 포함하여 전형한다.**
- ▶ 기회균등전형 미충원 발생 시 사회다양성 전형에서 충원할 수 있다.
- ▶ 사회통합전형 탈락자는 일반전형에 포함하여 전형할 수 있다.
- ▶ 사회통합전형 미달 시 **일반전형에서 충원하지 않는다.**
- ▶ **입학전형(사회통합전형 합격자 선발)과 고교 입학 후 실제 교육비 지원 대상자 심사는 별개로 운영한다.**
- ▶ 부정 입학자 처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입학이 허가된 후라도 증명서 위조나 불법, 편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합격 및 입학 허가 취소** 등 엄정 조치한다.

**다. 전형별 지원자격(정원 외): '가' 항의 공통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해당 지원 전형 자격을 갖춘 자**

1) **교육지원대상자전형:**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해당자 **사회통합전형 동시 지원불가**

2) **특례입학대상자전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해당자

구분	자격요건	
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 이수자 (제1호)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초·중 과정을 모두 외국에서 이수한 자에 한함)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 가목)	외국학교에서 <b>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b>	외국의 학교에서 <b>2년 이상</b>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제2호 다목)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b>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b> 이수한 학생)
북한 이탈 주민 자녀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b>보호대상자</b> 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북한 이탈 주민 자녀 (제4호)	▶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 제97조제1항제3호: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 제98조의3제1항: 교육감은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북한 이탈주민등인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북한이탈주민등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 외국 거주 및 **체류, 재학기간**(「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가목 해당자)

구분	거주기간	실체류기간	재학기간	비고
부모	2년 이상	1년 이상	-	거주기간 내의 실체류 기간 거주 및 실체류 기간 <b>동시 적용</b>
자녀	2년 이상	-	2년 이상	거주기간 및 재학기간 동시 적용

※ 부모 중 1인과 출국한 경우도 해당(단,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외 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증빙자료 제출)

※ 외국 학교에 입학 수속이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의 제 3항제2호가목의 거주기간 또는 재학기간이 2년에서 미달된 때에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각 2월의 범위 안에서 거주기간과 재학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기간 산정 기준

구분	산정 기준
거주기간	◆ <b>특정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국가에 실제 거주한 기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최초 입국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으로 입증)</b>
체류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출입국사실증명서로 확인)
재학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여부와 인정하는 재학 기간 등은 당해국의 교육 관계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리나라의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결정

**4 전형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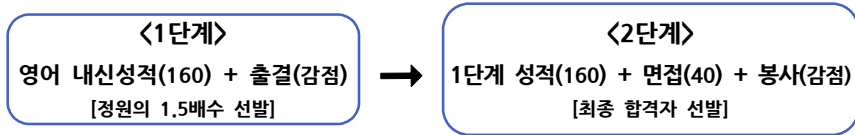
구분	일시	비고
인터넷 원서접수	2015.11.23.(월) 09:00 ~2015.11.26.(목) 17:00	▶ 인터넷으로 접수 ( <a href="http://apply.uway.com">http://apply.uway.com</a> )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전형료(6,000원)를 납부해야 인터넷 접수가 완료 됨 (인터넷 접수 수수료 3,000원 별도) ▶ 결제 이전까지 작성서류 내용은 수정 가능함 ▶ 제출서류는 [VII 전형별 제출서류] 참고
서류 제출	2015.11.24.(화) 09:00 ~2015.11.26.(목) 17:00	※ <b>인터넷 입력내용: 입학원서, 자기소개서</b>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및 수험표 출력	2015.11.28.(토) 16:00	▶ 본교 홈페이지 ▶ 수험표는 유웨이에서 전형료(20,000원)를 납부하고 출력하여 출신중학교의 학교장 직인을 찍은 후 2단계 전형 면접일에 지참 ▶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수험표의 출신학교 직인란에 해당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의 직인을 찍은 후 전형일에 지참
2단계 전형 면접	2015.12.01.(화) 08:00 ~ 17:00	▶ 본교 - 면접과 관련된 사항은 1단계 합격자 발표 시 홈페이지에 공지 ※ 1단계 전형에서 동점자 합격 처리로 인하여 면접 대상자의 수가 현격히 증가할 경우 면접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최종 합격자 발표	2015.12.03.(목) 11:00	▶ 본교 홈페이지
합격자 소집	2015.12.07.(월) 14:00	▶ 본교

◆ 서류제출 마감 시간까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우편접수인 경우 11.26.(목) 17시까지 본교 도착분에 한함. 마감시간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없음

◆ 위의 일정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5 전형 방법

### 가. 자기주도학습전형 절차 개요



**영어 내신성적 = 중2, 3학년 4개 학기 영어환산점수의 합**

1단계	2단계
<b>영어 내신 성적(160점) + 출결(감점)</b> ◆ 모집정원의 1.5배수를 선발 ◆ 영어내신성적은 2, 3학년 4개 학기 영어환산점수 ◆ 중2 성취평가제 성적 + 중3 석차 9등급제 성적 ◆ 출결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감점 무단결석 일수×0.3점 무단지각, 무단결과, 무단조퇴 횟수×0.1점	<b>1단계 성적(160점) + 면접(40점) + 봉사(감점)</b> ◆ 최종 합격자 선발 ◆ 서류: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II ◆ 면접 내용 - 자기주도학습 영역 및 인성 영역 ◆ 봉사활동시수 40시간 미만 감점처리

### 나. 전형별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자기주도학습전형	모집정원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1단계		2단계		
		영어내신성적 + 출결	영어내신성적 + 출결	면접	총점	
정원 내	일반전형	75	160	160	40	200
	김해지역우수자전형	25	160	160	40	200
	사회통합전형	25	160	160	40	200
정원 외	교육지원대상자전형 (국가유공자 자녀)	3	-	-	40	40
	특례입학대상자전형	3	-	-	40	40

※ 특례입학 대상자의 경우 면접점수가 전체 학과의 일반전형 합격생 최하위 면접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 다. 전형요소별 성적 산출방법

#### 1) 1단계 - 영어 내신성적 및 출결 점수 산출 방법

##### 가) 영어 내신성적 산출 및 반영 점수

중2 성취평가제 학기당 성취도 수준별 환산점수

성취도	A	B	C	D	E
부여 점수	5	4	3	2	1
학기당 환산 점수	40	36	32	28	24

◆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중학교의 경우, 성적 산출 시 자유학기제 미 운영 학기의 성적으로 대체하여 활용(예: 2학년 1학기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수한 경우 2학년 1학기 성적을 2학년 2학기 성적으로 대체)

- ◆ 중학교 졸업(예정)자 가운데 2학년 성취 수준이 없을 경우 원점수를 활용하여 수, 우, 미, 양, 가를 활용하여 수는 A, 우는 B, 미는 C, 양은 D, 가는 E로 성취 수준 부여
- ◆ 산출 기준일: 교과영역 산출기준일인 2015년 11월 20일(금)까지 산출

중3 석차 9등급제 학기당 등급별 환산점수

기준	4%	11%	23%	40%	60%	77%	89%	96%	100%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학기당 환산점수	40.0	38.4	35.6	30.8	24.0	16.0	9.2	4.4	1.6

#### 나) 출결점수: 영어 내신성적에서 감점 적용

- ◆ 반영 학년: 중학교 전학년(1~3학년)
- ◆ 반영 점수: 무단결석 1일당 0.3점씩 감점하고 무단 결과/조퇴/지각은 1회당 0.1점씩 감점
- ◆ 산출 기준일: 비교과영역 산출기준일인 2015년 11월 16일(월)까지의 사항을 반영

#### 다) 특수한 경우 반영 방법

- ◆ 외국에서 국내 중학교에 편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4개 학기 영어성적 중 일부만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단, 소수점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반영한다.)

가용 학기		산출 방법
3개 학기 성적이 있는 경우	중2 성적이 1개 있는 경우	중2 성취도 수준별 환산점 X 2 + 중3 9등급제 등급별 환산점
	중3 성적이 1개 있는 경우	중2 성취도 수준별 환산점 + 중3 9등급제 등급별 환산점 X 2
2개 학기 성적이 있는 경우		2개 학기 환산 점수의 합 ×2
1개 학기 성적이 있는 경우		1개 학기 환산 점수 ×4

- ◆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영어과목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 표와 같이 환산한다.

검정고시 영어점수	100	96	92	88	84, 80	76, 72	68	64	60이하
인정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영어내신 환산점수	160	154	142	123	96	64	36.8	17.6	6.4

### 2) 2단계 - 면접 항목 및 봉사활동 점수 반영 방법

면접 항목	면접 내용
자기주도 학습 영역	공통역량확인, 자기주도 학습 과정, 진로계획 및 자원동기, 독서경험
인성 영역	핵심 인성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및 배우고 느낀 점

- ◆ 면접은 제출된 학교생활기록부II, 자기소개서에 대한 기록물을 바탕으로 총체적 평가 방식을 취한다.
- ◆ **면접 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독서활동 내역을 토대로 독서경험을 질문함.**
- ◆ 면접 평가결과는 40점 만점으로 최종 결과에 반영한다.
- ◆ 검정고시 합격자는 독서기록카드(본교 홈페이지 양식 탑재)를 작성하여 제출
- ◆ 졸업(예정)자의 봉사활동 시수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동안의 봉사활동시간으로 기본 시수를 40시간으로 한다.
- ◆ 검정고시 합격자는 봉사활동 기본시수를 20시간으로 한다. (인정기간 : 2015.01.01.~ 2015.11.16.)
- ◆ 봉사활동 시수가 기본시수에 미달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면접 점수에서 감점 처리한다.

	4개 학기 재학자	3개 학기 재학자	2개 학기 재학자	1개 학기 재학자
기본 시수	40	30	20	10
감점	기본시수에서 1시간 미달 시 마다 0.1점 감점			

## 6 합격자 사정

### 가. 합격자 사정 방법

- ◆ 1단계 전형에서 영어 내신 성적 + 출결(감점)으로 1.5배수를 선발하고 (소수정 이하는 올림), 2단계 전형에서 1단계 성적 + 면접 + 봉사(감점)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 ◆ 합격자 사정은 학과별, 전형별로 진행한다.
- ◆ 합격자 사정은 남·여 구분 없이 총점 순으로 선발한다.
- ◆ 미등록 등으로 인하여 총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학과 해당전형의 불합격자 중 2단계 전형 성적이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1차에 한함)
- ◆ 일반전형에서 지원자가 미달일 경우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모집한다.
- ◆ 김해지역우수자전형에서 지원자가 미달일 경우 해당학과 일반전형 2단계 불합격한 자 중 김해 지역 지원자를 대상으로 2단계 전형 성적이 높은 순으로 우선 선발하며, 이후 미달이 발생할 경우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모집한다.
- ◆ 사회통합전형에서 지원자가 미달일 경우 추가 모집하여 영어 내신 성적 확인서 및 학교생활기록부 II를 토대로 전형을 실시한다.
- ◆ 전형별 지원자가 미달일 경우 배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전원 합격을 원칙으로 한다.
- ◆ 모든 추가 모집은 1회로 제한한다.

### 나. 동점자 사정 방법

- ◆ 1단계 전형 동점자 사정: 정원의 1.5배수에 해당하는 마지막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하여 면접을 진행한다.
- ◆ 2단계 전형 동점자 사정: 자기주도 학습과정 면접점수,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면접점수, 인성 영역 면접점수, 영어내신 3학년 2학기 점수, 영어내신 3학년 1학기 점수, 영어내신 2학년 2학기 점수, 영어내신 2학년 1학기 점수 순으로 선발한다. 이후 동점자 및 기타 문제는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다. 합격자 배제 조건

- ◆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자
- ◆ 전국 소재 전기고 중 이종 지원한 자
- ◆ 본교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기 어렵다고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판단한 자

## 7 전형별 제출서류

구분	공통 제출서류
지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하여 지원자, 보호자, 담임교사 및 학교장 확인(날인)하여 제출</li> </ul> </li> <li>◆ 자기소개서(본교소정양식) 출력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하여 지원자 및 중학교 담임교사 확인(서명)하여 제출</li> <li>- 작성 시 기재금지사항 기재 시 영점 혹은 감점처리</li> <li>-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참조</li> </ul> </li> <li>◆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II 출력본 2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면 인쇄하여 원본대조필 한 후 직인하여 간인하여 클립으로 철한 후 제출</li> <li>- 수상경력(4번), 교과학습발달상황(7번)은 출력 시 제외</li> <li>- 비교과 산출 마감일 2015년 11월 16일(월)까지의 사항을 반영</li> </ul> </li> <li>◆ 영어 교과 등급 확인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li> <li>- 교과영역 산출기준일인 2015년 11월 20일(금)까지 산출</li> <li>-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성적까지 기재하며, NEIS에서 출력하여 원본대조필 후 투명테이프로 봉인하여 날인하고, 학교장 직인 날인하여 제출함</li> </ul> </li> <li>◆ 지원자격별 추가 증빙 서류(해당자)</li> <li>◆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지원자용) 1부(본교 홈페이지 양식 탑재)</li> <li>◆ 모든 제출 서류의 각 페이지 우측 상단에 원서접수 시 부여된 접수번호 기재</li> </ul>
담임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담임교사용) 1부</li> </ul>

### 가. 일반전형 및 김해지역우수자전형

구분	제출서류
일반전형 및 김해지역우수자전형	모든 지원자 공통 제출 서류 (위 표 참조)



나.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전형

구분		모든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외 추가 제출서류		
<b>기회균등전형 공통서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li> <li>◆ 학부모 확인서 1부(본교 홈페이지 양식 탑재)</li> </ul>		
사회통합전형	기회균등전형	기초생활수급자(법정)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차상위계층(법정)	차상위 자활대상자	◆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 1부
			차상위	◆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증명서 1부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계층(인정)	차상위 우선돌봄대상자	◆ 우선돌봄 대상자 확인서 1부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1부(중학교 소정양식)	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지사)에서 발급	
		◆ 건강보험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해당자)		
		(부모가 같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해당자)				
(부모가 같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차차상위계층	◆ 차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1부(중학교소정양식)	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지사)에서 발급		
	◆ 건강보험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부모가 같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부모가 같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학교장 추천자	◆ 학교장 확인서 1부(중학교 소정양식,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지사)에서 발급		
	◆ 추천위원회 회의록 1부(중학교 소정양식)			

다. 사회통합전형 중 사회다양성전형

구분		모든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외 추가 제출서류	
<b>사회다양성전형 공통서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장 추천서 1부(중학교 소정양식)</li> <li>◆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소규모 학교 졸업예정자는 제외)</li> <li>◆ 학부모 확인서 1부(본교 홈페이지 양식 탑재)</li> <li>◆ 건강보험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부모가 같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각각 1부)</li> <li>◆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부모가 같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각각 1부)</li> <li>◆ 재산세 납입내역 증명서 1부(직장가입자 및 혼합 대상자에 한함)</li> <li>(부모가 각자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각각 1부)</li> </ul>	
사회통합전형	사회다양성전형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1부
		다문화가정 자녀	◆ 혼인관계증명서(부모) 1부 ◆ 기본증명서(본인) 1부 ◆ 외국인등록증명서(부모) 1부(해당자)
		북한이탈 주민 또는 자녀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1부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1부
		아동보호시설 재원자	◆ 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소년·소녀 가장	◆ 소년·소녀 가장 증명서 1부
		조손 가정 자녀	◆ 없음
		장애인(1급~2급)의 자녀	◆ 복지카드 사본 1부(원본대조필)
		순직 군경·소방관·환경미화원·공무원의 자녀	◆ 순직확인서 1부(해당기관장 발행)
		다자녀 가정 자녀	◆ 형제·자매의 고교 재학증명서(해당자)
		한부모가정 자녀(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 미발급자)	◆ 없음
		군인자녀	◆ 재직증명서 1부(총 재직기간 명시)
		소규모학교졸업예정자(입학-원서접수일 현재까지 재학자)	◆ 학교장 확인서 1부(중학교 소정양식)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녀	◆ 무형문화재 인증서 사본 1부(원본대조필)
		산업재해 근로자 자녀	◆ 산업재해근로자 확인서 1부(객관적 증빙서류 첨부제출) ◆ 추천위원회 회의록 1부

라. 교육지원대상자전형

구분		모든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외 추가 제출서류	
<b>교육지원대상자전형(국가유공자 자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li> <li>◆ 보훈지청장 확인 또는 지원학생 명의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li> </ul>	

마. 특례입학대상자전형

구분		모든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외 추가 제출서류	
<b>특례입학대상자전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례입학 신청서 1부</li> <li>◆ 특례입학 추가 서류(아래표 참조)</li> </ul>	

구비서류	해당자별	(제2호가목)	(제2호나목)	(제2호다목)외국인		(제3호)북한이탈주민	비고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학생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학생	기타 외국인 학생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 증명서	○	○	○	○			재학학년, 재학기간 명시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	(○)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학생)	○ (학생)			출입국관리사무소 주민센터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순수외국인은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 증명서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	○			○		재외 동포자녀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유치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사본		○					주무부장관 발급
제3국 수학인정서	(○)						부모체류국 해외공관장 발행
국내거주사실 확인서, 영주권사본	(○)						재외 동포자녀에 한함(별첨서식)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필증			○ (부모, 학생)	○ (학생)			거주지 주민센터 발급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 (부모, 학생)						재외공관장 확인 외국체류기간명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및 학력보증서					○		해당기관장 발행

※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제1호 해당자:**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각 1부, 전가족 주민등록등본 1부, 외국학교 전 학년 졸업(이수)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특례입학신청서 1부

**제4호 해당자:**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학력심의위원회 인정서 1부, 특례입학신청서 1부

-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특례자격이 취소됨
- ※ 부정 특례입학 방지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보증을 요청할 수 있음
- ※ 구비서류 중 학적서류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외국 학력 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다만,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기관임을 소명(해당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
- ※ 영문 및 한글 이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반드시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을 것

## 바. 검정고시 합격자

구분	모든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외 추가 제출서류
검정고시 합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li> <li>◆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li> <li>◆ 독서기록카드(본교 홈페이지) ◆ 봉사활동확인서(본교 홈페이지)</li> </ul>

- ※ 검정고시 합격자가 사회통합 전형으로 지원할 경우
  -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차상위·차상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를 해당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 학교장 추천자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생계 곤란) 지원 대상자 교육장 확인서’를 해당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 8 서류 작성 방법

## 가. 자기소개서(나의 꿈과 끼)

### 1) 자기소개서 평가 영역

#### ◆ 자기주도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 통합 (1,500자, 띄어쓰기 제외)

### 2) 자기소개서 주요 항목

- ◆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
  - **자기주도학습 과정:**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계획·학습 그리고 그 결과 평가까지의 전 과정(교육과정에서 진로체험 및 동아리 활동,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및 경험 등 포함)
  -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본교의 학교특성과 연계해 지원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
- ◆ 인성 영역
  - 봉사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등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등
- ※ 위에 제시된 것 이외에 학생이 발굴하여 작성할 수 있음
- ※ 영역 구분 없이 1,500자(띄어쓰기 제외) 이내로 작성

## 3)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 ◆ 자기소개서는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과 인성 영역 평가가 가능하도록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파일 형태로 제출
- ◆ 인증시험 및 경시대회 입상 증빙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우회적·간접적인 진술에도 영점 처리
- ◆ 자기소개서의 표절·대필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유사도검증시스템’을 적용하여 **대리작성, 허위 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에도 **입학취소 등 불이익 부과**
- ◆ 자기소개서 본문에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 영어 등 각종 인증 및 능력시험 점수 또는 결과, 경시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취득 상황,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기재금지사항을 기재할 경우**,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점 처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양시 내용 등 기재 시 항목 배정의 **10% 이상 감점**처리 함

### 【자기소개서 작성시 기재 금지 사항】

-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
- TOEFL·TOEIC·TEPS·TESL·TOSEL·PELT, HSK, JLPT 등 각종 어학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교내·외 각종 경시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양시하는 내용  
(예)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듬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 【잘못된 자기소개서의 작성 사례】

- 저는 00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000입니다.
-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TOEIC 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어공부에 매진한 결과 850점을 얻었으며 “노력은 결과를 대신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 중2 겨울방학 중 000에서 주최하는 0000 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 어렸을 적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전국 단위의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00지검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 나. 학교생활기록부

### 1) 학교생활기록부 출력 방법

- ◆ 학교생활기록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11)는 출신중학교장 원본대조필 후 제출한다.  
**출력제외 사항: 수상경력(4번), 교과학습발달상황(7번)**

# 9 서류 제출처

- ◆ 인터넷 접수처: (<http://apply.uway.com>)
- ◆ 출력한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타 증빙서류: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 **모든 서류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확인 후 제출**
- ◆ 제출처: 우)621-320 경남 김해시 율하로 266(율하동 262)  
김해외국어고등학교 교무실 학교홍보부 <☎ 055-724-1280>



## 10 기타 사항

- ◆ 제출된 서류 및 입학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본교에 지원하는 자는 전기모집을 하는 다른 학교(일반고 중 예·체능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 일반고 중 특성화과)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중지원으로 판명되면 합격을 취소함
- ◆ 1단계 합격자는 모두 면접에 응시하여야 함. 면접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함
- ◆ 지원은 학교별로(복수학과 지원금지)하며, 일반전형, 김해지역우수자전형, 사회통합전형, 교육지원 대상자전형, 특례입학대상자전형 중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
- ◆ 서류를 접수한 후 지망 전형 및 학과를 변경할 수 없음
- ◆ 입학원서의 '영어 내신성적란', '출결상황', '봉사활동시간'은 담임교사가 기재된 내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투명 테이프로 봉인함
- ◆ 검정고시 합격생의 경우 입학원서 '영어 성적란'은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고입담당자가 기재된 내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투명 테이프로 봉인함
- ◆ 특례입학 대상자는 출신중학교(출신중학교가 없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구비서류 내용 및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출력하여 중학교장(중학교가 없는 자는 교육장) 확인을 거쳐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본교에 개별 접수한다.
- ◆ 영어 내신 4개 학기 성적이 없는 자는 10페이지 특수한 경우의 영어 내신 산출방식에 따름
- ◆ 모든 서류는 단면 인쇄 또는 단면 복사하여 제출함
- ◆ 중학교 졸업자 중 고등학교에 입학한 경험이 있는 자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 (예)제적증명서 또는 자퇴확인서
- ◆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만 하며[2015.11.23.(월) 09:00~11.26.(목) 17:00], 인터넷 접수 후 원서 출력본을 포함한 제출서류는 인편 혹은 우편으로 제출해야 함 [2015.11.24.(화) 09:00 ~ 11.26.(목) 17:00]
- ◆ 인터넷 접수 후 제출자료 목록을 출력하여 봉투 겉면에 부착한 후 제출함
- ◆ 제출 서류는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본교 접수처에 마감시간[2015.11.26.(목)17:00]까지 도착하여야 함
- ◆ 본 전형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6학년도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기본 계획』에 의거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함
- ◆ 입학원서에 기재된 개인 정보는 신입생 입학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수집·이용·제공되며, 원서접수 시 이러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원서를 접수할 수 있음
- ◆ 사회통합 전형의 합격자라고 해서 입학 후 교육지원대상자는 아니며, 경상남도교육청이 정하는 교육비 지원대상자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에 한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임
- ◆ 본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은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하여야 함
- ◆ 면접 평가 후 외부 전문기관(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
- ◆ 본교 합격생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추후 어떤 학교에도 응시할 수 없음
- ◆ 기타 사항 문의처: 전화 <055-724-1280>

## 붙임 1 2016학년도 사회통합전형 관련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2015년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781,168.5	24,280	3,571	24,944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2인	1,330,098.0	40,515	18,324	41,017	"
3인	1,720,682.0	52,333	32,803	52,957	"
4인	2,111,266.5	64,080	52,026	64,956	"
5인	2,501,851.0	75,980	72,579	76,843	"
6인	2,892,435.0	88,430	88,962	89,521	"
7인	3,283,019.5	99,769	105,472	100,852	"
8인	3,673,604.0	112,221	122,708	113,621	"
9인	4,064,188.5	124,384	137,773	126,158	"
10인	4,454,773.0	135,442	149,772	137,248	"

※ 변경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일이 '15.7.1.인바, ' 15.7.1.이후 시행하는 사회통합전형에 활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 □ 최저 생계비 150% 가구(2015년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926,000	28,462	6,730	29,371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2인	1,577,000	48,368	26,859	48,560	"
3인	2,040,000	62,201	48,941	62,970	"
4인	2,502,000	75,980	72,579	76,843	"
5인	2,965,000	90,671	91,873	91,062	"
6인	3,428,000	104,450	112,143	105,783	"
7인	3,891,000	118,139	130,183	119,751	"
8인	4,354,000	133,489	147,619	135,442	"
9인	4,817,000	147,705	162,840	149,834	"
10인	5,280,000	161,683	177,862	164,396	"

※ 4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50%는 기준 중위소득 약 59.2%에 해당(2015년 기준)

**붙임 2**

**2016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분위 구분 (경계값)	연소득 환산액	월소득 평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분위 (P10)	17,500,440	1,458,370	44,558	22,541	45,145
2분위 (P20)	26,691,861	2,224,322	68,276	58,698	69,151
3분위 (P30)	33,956,889	2,829,741	86,666	86,291	87,731
4분위 (P40)	40,352,541	3,362,712	102,078	108,758	103,233
5분위 (P50)	46,498,152	3,874,846	118,139	130,183	119,751
6분위 (P60)	53,265,477	4,438,790	133,489	147,619	135,442
7분위 (P70)	60,812,502	5,067,709	153,998	170,102	156,506
8분위 (P80)	71,543,571	5,961,964	182,127	199,987	185,538
9분위 (P90)	89,037,804	7,419,817	226,818	245,357	235,011

\*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통계청-물가·가계-가계-가계소득지출-가계동향조사(신분류))  
\* 통계표명 : 가구당 월평균 분위 경계값 및 적자가구 비율(2인 이상)

**붙임3**

**소득 분위별 재산세 납입금 기준표**

※ 기준 : 2015년

※ 단위 : (원)

소득구 분	월 추정 소득	재산 추정 금액	재산세 납입금(연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 세	총계
1분위	1,458,370	136,368,100	92,730	114,550	0	18,540	225,820
2분위	2,224,322	212,665,100	161,390	178,630	0	32,280	372,300
3분위	2,829,741	271,300,700	226,950	227,890	0	45,390	500,230
4분위	3,362,712	323,703,300	305,550	271,910	0	61,110	638,570
5분위	3,874,846	372,193,900	378,290	312,640	0	75,650	766,580
6분위	4,438,790	423,629,900	455,440	355,850	0	91,080	902,370
7분위	5,067,709	489,164,100	553,740	410,890	0	110,750	1,075,380
8분위	5,961,964	<b>577,591,500</b>	756,220	485,170	0	151,240	1,392,630
9분위	7,419,817	727,126,600	1,115,100	610,780	0	223,020	1,948,900

\* 재산세 납입금은 주택(아파트) 재산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 총 재산세(주택 기준) = 기본재산세+도시계획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